

제26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2025. 9. 22.

사 회 건 설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602호로 2025년 9월 8일 이규선 의원 외 4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5년 9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가 온·오프라인 상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고 국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제명: 영등포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나.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 다.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 라.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비밀 누설 금지 의무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여성
폭력방지기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5. 9. 3.~2025. 9. 10.)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제정 배경 및 취지

- 불법촬영물 유포 문제는 인터넷 보급과 영상공유 기술이 발전
함에 따라 수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사회문제가 되어왔으며,
온라인 환경 특성상 복제와 확산이 용이하여 피해영상의
완전한 삭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와 더불어, 최근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에 따라 허위 영상물
(딥페이크 등) 제작 및 유포 사례가 급증하면서 디지털성범죄로
인한 피해 범위와 심각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음.
- 이에 본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인권 보호를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임.

□ 주요 내용으로

- **안 제2조(정의)**는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피해자의 개념을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적용 범위와 대상자를 명확히 함.
- **안 제3조(구청장의 책무)**는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
- **안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담보하고자 함.
- **안 제5조(협력체계 구축)**는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피해지원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여, 지원의 전문성 및 실효성을 높이하고자 함.
- **안 제6조(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는 피해자 상담, 법률지원, 의료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규정하고 위탁·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함.
- **안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규정하여,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예방 효과를 강화하고자 함.
- **안 제8조(비밀 누설 금지의 의무)**는 업무 종사자의 비밀 누설을 금지하고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명시하여, 피해자 보호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피해자에 대한 ▲상담·보호 지원 ▲법률 지원 ▲치료 및 회복 지원 등 신속한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과 디지털성범죄의 사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등, 본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였으며,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가 타당하고 상위법에도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고 자료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 ① 사법경찰관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라 한다)에 대하여 신분을 비공개하고 범죄현장(정보통신망을 포함한다)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자들에게 접근하여 범죄행위의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이하 “신분비공개수사”라 한다)할 수 있다.

1.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죄

2.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 9. 15., 2016. 3. 22., 2018. 6. 12., 2025. 1. 21.>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4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정의)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개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